



초창기 언론법제 연구와 장용 교수의 기여에 관한 고찰*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jilee@hanyang.ac.kr

학문적 연구는 어느 누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력이 아닌 공동작업의 성격을 띤다. 또한 학문적인 노력의 결과들이 집적되어 이론적 발전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언론법제 영역 또한 제1세대부터 현재 세대에 걸쳐서 집적된 연구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학문이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향후 어떠한 발전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 바로 초기연구자들의 연구경향이다. 특정 학문분야 초기연구자들의 연구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이들의 연구가 언론법제 영역에 어떤 의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언론법제 연구의 초기연구자인 장용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 재평가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우선 장용은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학계가 자리를 잡고 현재의 위치로 발전하기 위한 길목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고 점에서 학문 1세대에 속하는 학자이면서 2세대로 변화해 가는 길을 열어 주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인식된다. 아울러 신문학회를 창립하고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해 나가면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표저서인 <언론과 인권>은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서의 언론법제 영역의 발전에 방법론과 이론 측면에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학문 1세대 연구자들이 활동했던 당시의 연구 환경이 지금과는 사뭇 다르고,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6년도)

접근방식에 대한 이해의 방향이나 정도에 있어서도 지금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하지만 ‘학문 발전’의 측면에서 초창기 학자들에 대한 은고지신의 평가는 관련 학문 분야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학문적인 발전이 요구되는가를 고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KEYWORDS

언론법제연구 · 장용 교수 · 학문 1세대 · 초창기 연구자 · 학문 발전 · 판례 분석 · Q 방법론

1. 문제제기

“국민의 알 권리가 부정되는 곳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으며 독재자와 국민의 알 권리는 상극적인 입장에서 계속 압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있는 정치 사회에서는 독재와 언론의 자유가 양립할 수 없다. 일단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재판에 대한 함구령이 판을 치게 되며 다른 모든 자유는 점차로 위축 침해되어 민주주의의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례는 세계언론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거 언론사에서도 그 실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민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투쟁하면서까지 수호코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며, 「매스 커뮤니케이션」 산업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수호하는 것은 절대로 언론계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장용, 1969)

위 글은 장용 교수(이하 장용으로 칭함)가 1969년 저술한 <언론과 인권: 한·미 언론법과 판례의 비교연구>(이하 <언론과 인권>)의 서문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약 49년 전 저술된 이 책을 통해 1세대 언론법제 분야 학자로서의 장용의 위상, 그리고 당시에는 비록 낮은

분야였으나 현재의 모습으로 언론법제 연구가 발전하게 된 학문적 원류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은 지금도 언론법제 관련 학문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필독서 중 하나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책이 언론법제 영역을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¹

대개 하나의 학문이 독립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학문만이 가지는 이론과 방법론이 필요하다(이준웅, 2016). 언론법제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법제는 언론과 관련된 현상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임병국, 2002)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언론(표현)의 자유와 다른 개인 기본권 간의 갈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띤다(이재진, 2002).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학문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독자적 방법론을 통하여 이론을 검증하려는 연구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서 언론법제 영역의 발전은 초기 학문으로서의 지평을 열기 위한 1세대 연구자들의 노력이 뒷받침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언론법제가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떠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모색이 요청된다. 언론법제 영역은 관례에 대한 전통적인 법논리적 분석 방법에서부터 법사회학적 분석 방법, 관례 평석,² 그리고 법적 현상을 경험적 방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이용된다. 비록 통합적인 이론적 접근 방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단순한 법해석적인 시각에서 언론과 관련된 법을 분석하던 방법론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1 현재 언론법제 영역은 법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의 단순한 교차로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유의선, 2009).

2 대표적으로, 이승선 (2007).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안기부 X과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8호, 211~244.

학문적 연구는 또한 어느 누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력이 아닌 공동 작업의 성격을 띤다. 즉 다양한 학문적인 노력의 결과들이 집적되어 이론적 발전을 마련하게 된다.³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언론법제 영역 또한 학문 1세대 부터 현재 세대에 걸쳐서 집적된 연구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떠한 학문이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향후 어떠한 발전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학문 1세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학문 1세대 중에서도 특정 학문분야의 초기 연구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법제 영역의 초창기 연구자의 연구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그 연구가 언론법학계에 어떤 의의가 있는가를 학문적 기여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장용은 미국 커뮤니케이션학 이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여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학의 기반을 조성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미국식의 언론학 교육체계를 한국에 도입하여 오늘날의 언론학계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 아울러 신문학회를 창립하고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한국언론학회 50년사>에서 10명의 유공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⁵

3 언론법제 영역의 최근 학문적 발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재진, 박성순 (2015). 언론법제 연구의 이제와 오늘: <언론중재>지 30년의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1권 3호, 213~260; 이승선 (2014).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2011~2013년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3권 1호, 1~28; 이승선, 이재진 (2011).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언론과 법>, 10권 1호, 153~188; 이재진, 이승선 (2008). 언론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언론과 법>, 7권 1호, 105-134; 이승선 (2005).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227-262 등 참조.

4 이에 대한 긍·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5 정진석은 <한국언론학회 50년사> 제1장 한국언론학회 50년: 성장과 변화의 역사(1959~2009)에서 언론학회 발전의 유공자로서 박권상, 신인섭, 오인환, 오주환, 윤희중, 이해창, 임근수, 장용, 정진석, 천관우 등 10인을 선정하였다.

장용이 실시한 연구의 내용에 비춰 본다면 무엇보다 그는 언론법제 영역의 최초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언론법제 연구의 기본적인 터전을 닦은 1세대 학자로서의 장용의 학문적 기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학문 발전'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관련 학문분야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언론법제 교육에 대한 고찰을 실시한다. 왜냐하면 언론법제 연구는 언론법제 교육과 역사적 맥을 같이하며, 연구가 교육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이재진, 2007). 다음으로 언론법제 연구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속에서 장용의 다양한 학술활동과 업적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2. 언론법제 교육과 연구 환경의 변화

언론법제 분야 학문 1세대의 연구업적과 학문적 기여에 대해서 평가하기에 앞서 동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언론법제 연구는 궁극적으로 언론법제 교육과 함께 이루어진다. 교육이 시작되면서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고 연구가 교육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연구와 교육은 그 역사적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언론법제 교육은 1950년대 대학에 '신문학과'가 창립되면서 점차 확대되었는데, 저널리즘 교육의 일부로 신문학과에서 시작되었다.⁶ 역사적으로 보면 대학 커리큘럼상의 언론법제 교육은 1953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신문학과를 개설

6 미국의 경우에도 언론법제 영역은 커뮤니케이션학의 일부로서 발전해왔다(염규호, 1999).

한 홍익대학교가 1955년 커리큘럼에 「신문윤리법제」라는 과목을 개설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이재진, 2002).

당시 해당 과목의 강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해당 과목이 저널리즘 과 법 분야의 지식을 모두 요구하는 상급생(4학년) 교과목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에서 개설하는 「법학개론」을 4학년에 진입하기 전에 선행 과목으로 수강해야 했다. 즉 구체적인 언론법 분야에 대한 수업을 위해서는 저널리즘 지식과 더불어 기초적인 법지식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이재진, 2007).⁷

이러한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1962년 홍익대 신문학과가 당시 새롭게 제정된 교육조례 위반으로 폐과되면서 잠시 중단된다. 그러나 신문방송 관련 학과들이 점차 설립되면서 언론법제 교육은 조금씩 더 많은 대학들에 의해 수용된다. 1956년 중앙대학교에, 1960년 이화여자대학교에, 1963년 한양대학교에, 1965년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 그리고 1966년 성균관대학교에 신문과 관련된 학과들이 생기게 되었다. 모든 학교들에서 어떻게 언론법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1963년 개설된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과 개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언론법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이재진, 2007).⁸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법학계통의 전공에서 실

7 미국에 있어 언론법제가 하나의 독립된 연구분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라는 점에서 본다면(Gillmor & Dennis, 1989) 한국의 경우 언론법제 교육의 시작은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8 2006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중 약 69개 대학에서 언론법제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진, 2007). 그러나 언론법제 교육의 중요성이 대학과 언론현업에서 실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장호순(2016)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이면에는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문제해결 방식으로서의 '법치'의 전통이 결여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시되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에서 많이 실시되어 온 점은 언론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언론법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사하다(염규호, 1999). 언론법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은 이를 강의할 수 있는 적임자를 필요로 한다고 것을 의미하고 이들 교육 담당자들이 관련 연구나 저술활동을 하게 되었다.⁹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장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또한 한양대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언론법제 관련 연구들을 수행했다.¹⁰

장용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여타 1세대 연구자들에 비해 알려진 바가 상당히 미약하다. 실제로 그가 52세이던 1977년 급환으로 작고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잊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연히 그가 어떠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그 연구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학문 1세대가 은둔의 역사로 남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장용은 1969년 최초의 언론법제 관련 전문학술서인 〈언론과 인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장용은 1967년부터 사망한 해인 1977년까지 10여년을 한양대학교 신문학과(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봉직하였다. 그와 같은 시대에 학회활동을 한 언론학자들은 박복산, 임근수, 김규환, 최준 교수 등 신문학회를 창립한 주요 연구자들과 박권상과 같은 언론인들이었다. 이러한 1세대 연구자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현재 회원 수가 1,500명이 훨씬 넘는 거대 학회로

9 초기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은 언론현업 경력이 있는 일본과 독일을 배경으로 한 연구자들이 대부분이었다(이재진, 2007).

10 1977년 장용이 작고한 이후 한양대학교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팽원순 교수에 의해 이어졌다. 현직 언론인 출신인 팽원순 교수는 한양대에 재직하면서 한국 언론법제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는 언론법제 관련 최초의 교과서를 출간하였다. 1984년 집필한 '메스커뮤니케이션 윤리법제'는 출간 후 20년이 넘도록 언론법제 교육이 실시되는 대학에서 널리 읽혔다. 그는 언론법제 교육을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에까지도 도입하는데 공헌하였고 실제로 다양한 언론법제 관련 과목들을 대학원 커리큘럼에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과 연구의 토대는 장용 교수와 팽원순 교수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장하여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주도할 만큼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먼저 장용에 대한 소개를 위하여 그가 재직했던 한양대학교에 남아 있는 기록과 당시 같이 근무하신 분들의 증언, 그리고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현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에서 1993년 발간한 〈언론학보〉에 게재된 ‘장용 교수 추모 기념 학술회의와 간담회’ 내용을 살펴보았다. 장용의 연구업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연구소 등에 비치된 과거 언론관련 간행물 등을 최대한 검색하고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가 오래되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지 않은 탓에 그가 저술한 자료 전체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웠다.

분석에 있어서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단순히 당시의 현황을 기술하는 정도의 재평가 작업이 아닌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1세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즉 단순히 어떤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어떤 책과 논문을 썼다는 연대기적인 서술에 그치기보다는 연구자의 연구가 방법론과 이론적 측면, 즉 언론법제 분야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즉 변화하는 교육 및 연구 환경에서 장용의 연구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학문적 발전에 있어서의 그 함의는 무엇인가를 보고자 했다.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서 그가 커뮤니케이션학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은 1993년 2월에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에서 개최된 장용 교수 추모 기념학술세미나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당시 언론학계의 원로 및 중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병구 교수, 강현두 교수, 차배근 교수, 그리고 유재천 교수가 주제별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한 토론은 김동철 교수, 서정우 교수, 정진석 교수, 오인환 교수, 이상철 교수, 김지운 교수, 임상원 교수, 구종서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명구 교수, 김승현 교수, 최현철 교수 등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학술회의와는 별도로 김종량 부총장, 정대철 교수, 최창섭 언론학회회장, 이신복 교수, 언론인 박권상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학술회의와 간담회 참석자

들의 면면을 살펴 보건데 당시로선 상당한 규모의 행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만큼 장용 교수에 대한 추모와 재평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장용에 대한 특징적인 약력과 학문적 업적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26년생인 장용은 영문학자이자, 저널리스트 그리고 언론학자로서의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1952년 동국대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58년 미주리대(U of Missouri)에서 석사를 마친 후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동국대에서 영문학을 강의하였다(부교수 역임). 이처럼 영문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그의 저술들에서는 인문학적 접근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저널리스트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1962년 <경향신문>의 논설위원, 1962-1963년 월간 <신세계>의 발행인 겸 편집인, 1963~1964년 <일요신문>의 편집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7-1974년 <대한일보>의 논설위원을 지냈다. 즉 주요 언론사의 논설위원, 발행인, 편집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칠 정도로 당시로서는 비중 있는 언론인으로서도 활약하였다. 특히 그리고 1967년에 미주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67년부터 1977년까지 한양대 신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언론인으로도 활동한 것은 당시로서도 특이한 경력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학자로서의 장용의 학술활동이다. 학자로서 장용은 현재 '한국언론학회'의 모태인 '한국신문학회'(이하 신문학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60년 신문학회가 창립되어 광복산 교수가 초대 회장을 맡았을 당시 언론인 박권상과 함께 간사(현재의 총무이사)로 참여하였으며,¹¹ 그해 창간된 <신문학보>의 편집위원으로 1970년 제3호가 나올 때까지 활동하

11 장용은 1959년 6월 23일 한국신문학회 발기인대회에서 광복산, 최준, 오주환, 임근수 박권상과 함께 학회 규약 작성 전형위원으로 활동했고, 동년 6월 30일 당시 당시 언론인이면서 꾸준히 학술활동을 겸비해 온 박권상과 함께 신문학회 총회에서 초대간사로 선출되었다(김영희, 2016). 당시 초대회장은 광복산, 부회장은 임근수, 한경수였다.

였다(제2호는 창간호가 나온 이후 9년 뒤인 1969년에 출간됨). 이러한 측면에서 추정하건데 장용은 학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학회 창립 이래로 얼마나 오래 이사직을 맡았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적어도 1971년까지는 임원(이사)으로 학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¹²

둘째,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 저널리즘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였다.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저널리즘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최초의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 미주리대에서 'Development of Korean Journalism Education Based on American Practices'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¹³ 그는 박사 학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일본과 독일계 학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학계에 미국식의 학풍을 도입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다. 장용은 미국에서의 유학을 통하여 당시로서 생소했던 국민의 '알 권리' 개념을 공부하고 이를 우리 학계에 소개하였다. 그는 언론보도가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도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⁴ 언론의 자유도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식의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이의 법적인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은 이후 그의 언론법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대표작 <언론과 인권>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겠다.

12 한국언론학회에 오래 된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한국언론학회 50년사> 참조.

13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홈페이지, <http://comm.hanyang.ac.kr/main/faculty/1>) 저널리즘 영역에서 그는 미국직업신문동지회(SDX)라는 모임의 지회장을 맡아서 활동했다.

14 국내 저널리즘에서 알 권리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한 것은 1991년에 와서이다(이제진, 2006).

넷째,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에 Q방법론을 도입하고 이를 적용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강현두(2002)의 발표에 따르면 장용은 기존의 R방법론과 차별적인 Q방법론을 도입하고 이를 소개하였고 Q방법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편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강현두는 현재는 설문조사를 대신한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으나 당시 Q방법론이 너무 앞서가는 방법론으로 인식되어 널리 수용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Q방법론은 커뮤니케이션학 뿐 아니라 언론법제 분야에 사회과학적 방법론 측면에서 풍부함을 더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Q방법론은 언론법제 연구의 중요 영역인 ‘음란’(obscenity) 또는 범죄기사에 대해 기자들이나 법조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주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양재규·이창현, 2016).

다섯째, 우리나라의 전통적 신문학 교육(curriculum)을 현대의 커뮤니케이션학 교육으로 확대,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당시 가장 널리 이용되던 기본 개론서인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by Stanley J. Baran)을 당시 언론현업에 있으면서 학자였던 박권상과 함께 번역하여 <매스 컴론>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다. 이들은 이 책을 통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란 개념을 우리 언론학계에 새로이 도입하여 소개하였다.¹⁵

요약하자면, 장용은 미국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한 후, 한양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보도의 객관성과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식 저널리즘 시각에서 이론적 접근이나 비교언론법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실시하였다. 이처럼 장용은 인문학적 소양과 언론인으로서의 경력, 그리고 사회과학으로서의 저널리즘의 배경을 두루 겸비한 학자로서 현재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연구자였다. 특히 그는 저널리즘 배경의 언론법제 연구

15 박권상도 현재 언론인으로서 강의를 맡아서 하곤 했다. 그는 1968년 서울대에 신문대학원이 설립되었을 때도 신문대학원 전임교수들과 함께 신문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신문대학원에서 그는 ‘언론의 자유’ 과목을 담당했다고 한다(김영희, 2016).

방법을 도입한 우리나라 언론법제 연구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3. 학문적 기여에 대한 비판적 평가

장용의 학문적 연구를 추적하여, 일간 신문에 실린 칼럼이나 사설 또는 단행본 중의 한 챗터나 일부를 제외하고, 석사논문이 나온 1958년 이후부터 사망하기 이전 해인 1976년 까지 저술한 연구 중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20건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을 수집하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오래된 저널리즘 관련 저널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도서관에 소장된 저널 중 1950년대부터 1977년까지 간행된 저널리즘 관련 저작물들을 탐색해서 수집하도록 하였다. 물론 탐색이 완전하지 못하고 기록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있지 않은 탓에 더 많은 저술이 있었을 수 있으나 최대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술 저작물을 분석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용의 연구들 중에서 학술적,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전문 학술 논문들과 함께 특정한 사례나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드러내서 주장하고자 하는 평론이나 칼럼의 성격을 띤 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당시까지는 현재와 같은 전문학술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은 객관보도의 문제에서 신문의 책임과 질적 문제, 기자등록제 문제, 신문 및 신문기사의 품위(윤리)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널리즘 쟁점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언론법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서부터 필화사건의 요인 문제, 명예훼손법의 문제점, 외국과의 언론법 비교, 음란물 규제제도 고찰에 이르기까지 현재도 언론법제 연구에서 다뤄지는 핵심적인 쟁점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표 1〉 참조).¹⁶

장용의 저작물이 엄격히 학술적인 글에 그치지 않고 평론이나 칼럼과 같은 저작이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장 교수가 당시로서는 드물게 학자이자 저널리스트였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그는 당시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동시에 언론사의 논설위원 등 저널리스트로 활약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상당한 분량의 글을 다양한 신문, 잡지, 저널 등에 게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장용은 저널리즘 분야에서의 연구역량과 실제 언론 현업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필력을 동시에 갖춘 연구자였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연구들이 미국식 커뮤니케이션학 체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례분석을 언론법제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례분석을 언론현상 분석에 도입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에서부터 프라이버시권에 이르기까지 기존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룬다고 하더라도 법논리적인 해석(법해석학)이 중심이 되던 언론법제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의 바람을 불어넣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연구업적의 핵심적 내용은 그의 대표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언론과 인권〉에 모두 담겨 있다. 실제로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외하고서 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성찰은 불가능하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점은 1세대에 속하는 다른 학자들과의 학문적 접근 방식에서의 차별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언론학계 1세대에 속하는 학자들, 특히 외국에서 유학을 마친 학자들의 대부분은 공시학(publizistik) 또는 전통적 신문학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연구를 한 반면, 장용은 미국식의 저널리즘이론과 저널리즘 법제(Journalism Law)를 강의하였고, Q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연구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16 이러한 연구주제들은 현재에도 언론법제 연구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이재진, 2006).

표 1. 장용의 언론법제 관련 대표 연구 개관

연구분야	논문/논평/책 제목	발표지/출판사	발표년도
언론의 자유	Survey of Korean newspapers: Study of Rhee and the press	석사논문	1958,6
언론의 자유	「쟁거」재판과 우리의 언론	동시대보	1958,11
언론의 자유	국제정치와 방송	방송(22권)	1959,3
저널리즘	미국 신문학 교육과 미조리 신문대학	매스콤연구(봄/2권)	1960
저널리즘 / 알권리	커뮤니케이션과 객관적 보도	신문학보(1호)	1960
저널리즘	신문학 교육에 대한 제언	신문논조평가	1962,2
언론윤리	신문인의 책임과 신문인의 질	신문연구(3권 1호)	1962 봄
언론윤리	신문의 품위	신문연구(3권 2호)	1962 여름
언론윤리	필화사건의 발생요건	신세계(1권 3호)	1963,1
언론윤리	신문의 마성과 신문위력의 한계	민족의 자유와 언론(고재욱 선생 화갑기념논총)	1963,6
저널리즘	매스 미디어의 기능과 특성	공보(9호)	1963,9
저널리즘	매스콤론(박관상과 공역)	을문문화사	1963
저널리즘	Development of Korean Journalism Education Based on American Practices	박사논문	1967,5
저널리즘	선거와 매스콤의 영향	세대	1967,6
방법론	7점 양극 척도에 의한 신문평가	신문평론	1967 여름
저널리즘	논평의 논리와 윤리	신문평론	1968 여름
저널리즘	Readings in Communications(편저)	송문사	1968
인격권 침해/알권리	언론과 개인법의 침해	한양대학교 30주년 기념 논총	1969,5
인격권침해	「커뮤니케이션」과 명예훼손 - 한 · 미 판례의 비교 -	신문학보(2호)	1969, pp. 21-41
언론의 자유	신문편집권의 독립	관훈저널	1969, pp.28-37.
인격권침해	언론과 인권(저서)	선명문화사	1969
언론의 자유	각국 기자등록제의 역사적 고찰	신문평론(봄/가을)	1972
방송의 자유	후진국 방송의 교육적 효과	신문학보 7호	1974,12.
언론의 자유	외설의 한계와 판단기준	신문평론(1월호)	1975

위 <표 1>은 장용이 저술한 여러 편의 다양한 형태의 연구 중에서 학술적인 논문과 저서를 선택한 것이다. 학자로서의 학문적 업적이나 기여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저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과 저서를 썼는가를 통해서 학자로서의 면모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를 통해서 본다면 장용의 연구는 <언론과 인권>이 나온 1969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1958-1968: 언론의 자유와 저널리즘의 기본

실제로 언론학자로서의 장용의 학문적 업적의 시작은 미주리대학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58년 “Survey of Korean newspapers: Study of Rhee and the press”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을 구입할 수 없어 그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제목을 통해 판단컨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언론정책과 이에 대한 언론인들이나 언론사의 반응을 연구한 것이라 여겨진다. 장용의 석사 학위 논문 이후의 저술들을 통해 추정해 보건데 아마도 언론의 자유 논의를 주로 다루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이후 장용은 이전 언론관련 법 규정의 문제점을 다루던 연구에서 벗어나 미국의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언론법제와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언론자유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 하나인 ‘존 피터 쟁거 사건’(John Peter Zenger Case)을 1958년 <동시대보>에서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 글은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지금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실’의 면책사유가 확립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쟁거 판결을 설명하고 아울러 비록 판례법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분석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그가 언론현업을 경험한 이유로 우리나라 언론보도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미

국의 판례가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

무엇보다 그는 필화사건의 원인으로 객관적 보도의 잘못을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1960년 <신문학보> 창간호에 장용이 게재한 “컴퓨터통신과 객관적 보도”라는 논문이다. 그는 커뮤니케이션이 구조화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개념에 근거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하고, 비트겐슈타인의 ‘동족적 유사성(同族的類似性)’에 근거하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보도에 있어서의 객관성, 즉 객관적 보도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보도의 객관성이 특히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즉 “언론에 대해 객관적 보도의 봉사를 요구할 권리가 국민, 즉 일반 독자에게 있는 만큼 민주적 언론보도에 있어서 객관성의 중요성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언론보도 기관의 경우 뉴스 보도, 사실 및 풍자와 시사 등을 엄격히 구분하여 커뮤니케이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을 통해 볼 때 장용은 이미 1960년에 객관적 보도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 권리와 관련하여 장용은 미주리대학 박사과정 중에 발표한 “A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four nations: America, Japan, Korea and Philippines”이라는 제목의 미발행 논문(학

17 판례분석을 통한 언론법 연구는 법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이용되어지는 용어들이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논란이 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석방법이다. 무엇보다 판례분석은 특정 쟁점에 대한 정의, 관계법의 적용범위,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그리고 결정의 합의를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경우 판결에 나타난 판사들의 기본적인 시각(견해)이나 판단근거와 그 변화를 검토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소송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가를 추론하여 현실적으로 언론사가 어떠한 측면에서 유의해야 하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해석은 판결에 대한 사회과학적 또는 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이재진, 2002).

술대회 발표 논문으로 추정됨)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 기본권을 근거로 개인이 원하는 바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자유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경제, 사회 및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정보가 제공되도록 알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권력구조를 감시(check)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공공문제를 알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미국적 민주주의 이념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사회적 현상과 철학적 사상이 초기에 없었다면 자유와 언론 및 출판 자유의 이념은 오늘날 미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 및 출판 자유의 신념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고 제2차 대전 이후 국경을 넘어 다른 신생 후진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자유를 위한 언론인들의 투쟁과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Chang, 1966).

장용은 객관적 보도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문학보> 제1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이를 특히 강조하는데 “... 언론보도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뉴스 보도에 의하여 진실을 전달함으로써 카이피의 세계를 마음 속에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만드려 주는데 있는 것이다. 또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서 이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며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만사가 다 국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니까 독자 즉 일반대중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서 그의 객관성에 봉사하여 달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뉴스를 전달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라고 보았다(장용, 1960, 41~60).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 장용은 저널리즘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전

술한 보도의 객관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미국적 저널리즘 교육과 윤리 등을 우리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보았다. 그는 신문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취재보도에 임해야 되며(장용, 1962a), 언론은 스스로가 다른 기관을 비판하는 공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다(장용, 1962b). 또한 그는 신문을 비롯하여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위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점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나아가 언론윤리를 충실히 따라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진실보도와 객관적 보도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식 저널리즘의 수용이 우리 언론에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언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한다(장용, 1962c). 이러한 장용의 생각은 1967년 저술한 본인의 박사논문 *Development of Korean journalism education based on American practices*에서 종합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1969~1976: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권과의 갈등

장용의 초기 연구가 언론법제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면, 이러한 논의를 확대 발전시키고 더욱 구체적으로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면서 미국적 관점에서 언론법제 현상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연구가 1969년 <신문학보> 제2호에 실리게 된다(21~40쪽). 그는 “커뮤니케이션과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의 언론법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명예훼손 현상의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이를 미국에서의 유사한 사건(판결례)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에서 장용은 당시 우리나라 신문들의 보도행태를 꼬집는다. 예를 들어 피의자 신분임에도 ‘진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 그리고 기사 제목(표제) 달기의 한계와 법적 제재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그는 언론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함부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범죄기사의 경우 용어 사용이나 실명 이용 등에 있어서 대단히 유의해야 함을 밝혔다.

같은 해인 1969년 장용은 <관훈저널>에 기고한 '신문편집권의 독립' 제하의 글에서 모든 미디어에 적용되는 편집권의 독립은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 언론의 자유리는 4개 함수의 총화라고 규정했다. 즉 편집권의 독립은 집권자의 수준, 사회문화수준, 국민의 지식 및 사상의 수준, 언론인의 신조의 총체적 합이라는 것이다. 그는 편집권의 독립을 이룩하는데 언론의 편집권을 옹호해 주는 사법부와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내부로부터의 압력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편집권의 독립을 꾀하는 길의 하나로서 내부압력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이란 기업과 신문제작을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평가했다.

1969년 장용의 저서 <언론과 인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대단히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쟁을 벌일 정도로 언론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중요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면 미국처럼 우리 언론이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다양한 법적인 제약에 매여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성'과 '공익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는 불리하다는 점을 설파하였다. 특히 비교적인 측면에서 미국 언론에게 유리하게 판결된 다양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우리 판결에서 지적되지 않는 여러 요건들이 미국에서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우리가 적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장용의 지적은 이후 198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책해야 한다'는 소위 '상당성 원칙'

을 도입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유포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며, 자신이 명예훼손의 의사로 자진하여 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고, 상대방의 물음에 대답했을 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를 부정한 점을 비판하면서, 사실을 유포하였다더라도 그 유포된 사실이 여러 사람을 거쳐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사실일지라도 공공공연한 적시로 인정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장용은 3년 뒤인 1972년 <신문평론> 40호(봄/여름)에 '각국 기자등록제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평론을 게재했다. 이는 1971년 12월 21일 신문협회의 '언론 자율정화에 대한 결정사항'으로 프레스카드제 실시가 발표되자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우선 역사적으로 각 국가에서 언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해 왔는가를 고찰하였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혁명 시기부터 언론을 통제하고, 국가총동원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전쟁목적 수행 내지는 장기집권이란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기자등록제가 이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기자등록제는 독일의 나치 통치 기간에도 실시되었으며, 일본도 이를 실시한 바 있는데 결국 기자등록제는 실제로는 언론 탄압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친독 언론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기자등록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즉 당시 정부가 언론을 바로잡는다고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실제로 언론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장용은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비기자 근절 등의 명분으로 그리고 언론보도의 개선과 언론계의 자율적 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는 기자등록제를 국민의 알 권리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기자등록제 실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언론정화를 위한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장용의 이러한 지적은 당시의 억압적인 정치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언론법제 연구는 그가 타개한 1977년 이전에까지 계속된다.

그는 <신문학보> 7호(1974)에 실린 '후진국 방송의 교육적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방송이 이러한 교육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문제와 교육방송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오늘날 EBS 탄생의 기본적 논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는 교육방송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요불가결한 사항임을 밝혔다. 그는 일본 NHK의 교육방송과 영국 BBC의 교육방송이 모범이 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필요한 적절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마지막 저술이 1975년 1월호 <신문평론>에 실린 '외설의 한계와 판단기준'이다. 여기서 장용은 우리나라 법원의 외설(음란)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음란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외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의 근거를 조만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용은 외설적 표현의 경우라도 이를 모두 규제해서는 안 되며(물리적 이유) 적절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4. <언론과 인권>에 나타난 언론법 연구의 특성과 방법론

지금부터 약 48년 전인 1969년에 저술된 <언론과 인권>은 언론학 교수가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언론법제 전문학술서이다. 이 책은 국내외의 언론법 관계 '참고문헌 서지'까지 첨부하여 당시까지의 연구로는 가장 깊이 있는 작업을 실시한 저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과 인권>은 당시 우리 사회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법제 연구

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전체 46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로서, 민주주의의 기초, 한·미 양국 헌법상의 언론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보장의 한계, 한·미 양국 헌법 판례상의 제한과 보장, 명예권과 명예훼손의 본질 및 범주, 언론과 개인법의 침해, 방송과 명예훼손, 언론과 사생활의 권리 등 10부로 구성되어 있다.

장용은 기존의 법해석적인 방식을 원용하되 법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보다는 미국식의 판례분석을 통한 함의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책에서 언론법적인 측면에서 깊이가 있고 다양한 내용과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는데, 이 책이 나온 1969년까지 언론법제 분야에서는 이 같은 종합적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발표된 단편 논문이나 비평은 다수 있었으나, 이를 중심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와 국가적 통제를 골자로 한 언론의 자유 및 국가법익, 사회법익 및 개인법익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문헌은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선진 외국과 비교한 문헌은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한 전제라는 점에 근거하여 ① 한국과 미국 양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자유와 그 제한의 한계를 비교하고, ② 국가이익 대 언론 자유 및 개인법익 대 언론 자유를 비교형량하는 양국 법체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③ 언론사범 관계를 국가법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판결의 경향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끝으로 ④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권과 사생활의 권리 침해 판결에 대한 비교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책의 각 부(장)별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서론'에서는 언론자유 의 의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 언론의 자유가 사회적 및 국가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과 비중,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와 개인법익, 사회법익, 그리고 국가법익간에 적절한 비교형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제2부 '민주주의의 기초'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알 권리에 근거한 언론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3부 '한·미 양국 헌법상의 언론자유'에서 장용은 미국과 한국에서의 언론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와 그 차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의 범주와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상의 헌법적 보호의 범주 간에는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미국과 한국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하여 이를 상호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제4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보장의 한계'에서는 제2장이나 제3장보다 더욱 미시적인 시각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제한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장용은 각 국의 언론을 제한하는 법률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언론·출판의 규제가 어떻게 실시되었는가를 비교 고찰하였다. 우선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언론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점차 사라져 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양한 법을 통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제해 온 역사가 있음을 탐색하고 있다.

제5부 '한·미 양국 헌법 판례상의 제한과 보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한국에 있어 오늘날의 헌법적 보장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건국 이후 존재하였던 다양한 언론통제법이 어떻게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폐지되었으며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될 수 있었는지를 제2차 대전 전후와 1953년 이후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까지의 대표적 언론통제법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미군정기부터 당시까지 나온 판결을 통해 어떤 방

식으로 언론통제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폈다. 미국의 경우 국가법익에 대한 강조가 점차 약화 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권력의 언론자유에 대한 보장에 있어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6부는 ‘명예권과 명예훼손의 본질 및 범주’는 개인적 이익과 언론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이 어떻게 이루어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미국 명예훼손법의 경우 1964년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의 영향으로 공직자에 대한 보도가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등을 통해서 명예훼손법이 대단히 발달하고 있는 관계로 미국에서와 같은 언론의 위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장용은 미국의 유사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미국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제와 관련 한국 판례는 미국과 같이 표제를 전체기사와 연관시켜 심리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소위 <박경원 대 경향신문>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허위의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의 조각 조문의 취지를 ‘보도전체는 물론 그 보도의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우리 법원은 기사의 불온 동기가 허위의 기사뿐만 아니라 표제 속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망자의 경우는 친고죄)인 반면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또한 공갈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점에 있어서 소위 <박경원 사건>의 판결요지에 따르면, 공갈적인 비난이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 원고의 범죄행위를 규명한 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의 여부, 그리고 사회법의 대 개인법익과의 우열을 따진 후에 사건을 심리 판단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라고 보았다.

제7부 ‘한·미 판례의 비교’에서 장용은 논평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의 쟁

점, 집단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출판물의 반복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문제, 그리고 표제가 명예훼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와 모욕과 명예훼손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분석했다. 실제로 제7부가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논평’이 면책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며, ‘표제’나 ‘공갈적 표현’의 경우 미국은 전체의 일부로서 판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독립적인 요건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경우 single publication rule에 의해서 책임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를 형사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점차 명예훼손과 분리된 영역으로 이를 인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욕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⁸

모욕에 대한 양국의 판례를 비교하여 본 결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 공산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국에서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그 면책사유에 관한 한 양국의 해석상의 폭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김종형 대 이강순> 사건을 분석하면서 모욕이나 욕설을 자아내게 한 과거 행실이나 욕설의 허구성 여부 또는 욕설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심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머시 침해 법리도입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한다. 즉 개인의 사적인 사실과 관련한 소위 <김진채> 사건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를 사생활 침해로 다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개척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판결상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를 중요시하고 판결에 반영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

18 제7부는 구체적인 법원의 판례와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사건을 예시하고 이를 미국과 비교적으로 연구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언론법 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린 연구라고 할 수 있다(정진석, 1994).

의 경우 비난적인 용어의 해석과 환경 및 피해자의 행실 등을 모두 결부시켜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따라서 미국식의 심리형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한국법은 대륙법계와 비슷하나 어느 모로 보면 일본법에 더 가까우며, 미국과 비교한다면 명예권이나 훼손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한 풀이가 규정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법과 상이하다고 설명한다. 구제 수단이나 면책특권도 미국에 비하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미국에 비해 취약하며 언론기관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영미법과 비슷한 점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증명'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그것도 공직자에 대한 논평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한국법상 구제수단은 영미법과 같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배상자의 생계를 고려한 경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색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제8부 '방송과 명예훼손'에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방송 관련법들이 어떻게 제정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면서, 미국의 경우 관련 판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법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례가 없어서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서 현재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는 방송의 경우 매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쇄매체와는 달리 제한적인 방식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은 양국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방송보도가 공적인물에 대한 보도인가 등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제한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9부 '언론과 사생활의 권리'에서 장용은 미국에서의 사생활권(Privacy)의 보호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이를 어떻게 언론의 자유와 이익형량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16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장용은 우리나라에도 사생활 개념을 빨리 도입하여 개인의 사적인 비밀과 자유의 부분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0부는 ‘결론’으로 1부에서 9부까지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언론법을 비교한 결과를 축약적으로 설명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가법익, 사회법익, 그리고 개인법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결론을 통해서 볼 때 장용은 이 책에서 크게 몇 가지를 천명하고 있다.

첫째, 언론의 자유는 모든 개인적 기본권의 토대가 된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여타 개인의 자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언론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례로 인식되는 젠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십년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둘째, 언론의 자유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전제로 한 자유이다.¹⁹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취재, 보도, 평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의 자유, 정보소통의 자유, 그리고 정보소통의 자유를 원만히 달성시켜 주는 언론 매개체의 자유이다.

셋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는 독재국가에 속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이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가 먼저 지켜져야만 한다. 따라서 언론인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보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넷째,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언론은 책임성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와 여러 사회적 이익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또는 국가적 이익들이 어떻게 비교형량이

19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것이라고 여겨진다. 알 권리라는 용어가 처음 신문에 나온 것은 1964년이며 1961년 신문윤리강령 개정 시에 삽입되었다고 한다. 이전에 알 권리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명확치 않으나 1960년에 출간된 <신문학보> 창간호에서 장용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객관적 보도가 필요하다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아마도 장용의 알 권리 주장은 언론학계에서는 거의 처음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법적인 연구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주국가의 자유는 ‘~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에로의 자유’ 더 나아가 ‘~을 위한 자유’여야 한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은 제반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행동의 결정을 할 수 없고 정부 및 사회의 운행을 올바르게 감시하거나 제동을 걸 수 없게 된다.

그는 “만일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보의 운행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언론기관”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매스 미디어가 자유롭게 보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왜냐하면 언론이 단지 “정부의 확성기 노릇을 하게 된다면 독재국가의 ‘얼치기’ 언론기관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용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언론과 국가법의 및 개인법익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매스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국가법의 대 언론자유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책이 시급하다. 새로운 정책을 통해 민주주의 기조에 입각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면 진정한 언론의 창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법익을 중심으로 한 언론의 침해관계를 원만히 조절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길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법원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언론을 다스림에 있어, 비판 또는 침해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질 때 커뮤니케이션 상황, 면책특권의 한계 등을 참조해야 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바 언론의 자유 관계를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사생활의 권리와 언론 문제는 현행법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므로, 법조계는 이 분야를 개척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 서신의 검열, 전화도청, 사사(私事)의 비밀침해 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이론의 개척과 발전이 시급하다.

넷째, 언론 윤리 기관은 어디까지나 자율적 심의기관으로서 언론계의 자질과 품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만큼 언론 윤리기관은 재판소를 대신하는 식의 역할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언론과 개인법익 관계 내지는 국가법익관계에 혼선을 빚기 쉬우며, 나아가서는 언론과 법질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다섯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와 논평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거나 제약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는 언론·보도매체의 전유물도 아니며 언론·보도매체를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개사회와 민주국민을 위하여 부여된 실체(entity)이다. 언론의 자유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개인법익과 사생활의 권리는 커뮤니케이션 대상자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수신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를 보호하는 실체가 되어야 한다.

4. 마치며

이 연구는 초창기 언론법제 연구자인 장용의 연구가 언론법제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용의 연구활동을 소개하고 그의 대표작인 〈언론과 인권〉을 중심으로 학문적 연구 업적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1세대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들, 예를 들어 '박권상 연구'(김영희, 2016), '김규환 연구'(양승목, 2013), 그리고 '임근수 연구'(강명구, 2013)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학문의 1세대의 시대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작업은 대개 연구대상이 되는 연구자의 약력과 활동에 대한 소개와 연구자가 저술한 논문과 책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한편 이들의 업적이 학문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연구 또한 이러한 한계점을 벗어 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은 비록 단순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지난 50년 이상 기간 동안의 언론법제 연구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살필 수 있으며 동시에 이를 통해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활약했던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학 분야 1세대를 대표하는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온 장용은 현재의 언론법제 분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개인의 인격권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것은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된다.

장용의 연구업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의 연구가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 또는 선도적 연구였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법제를 전공한 전문가가 다른 분야 연구자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의 가치와 중요성이 다소 과장되어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오늘날의 여타 언론법제 연구자들과 비교해도 연구 수준이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와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집대성한 〈언론과 인권〉은 비단 언론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연구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언론법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그의 연구가 언론법제 영역의 발전에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즉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언론법제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학문적 상호작용과 비교 검증을 통하여 언론법제 연구 영역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판례연구를 우리 언론법제 연구에 도입한 것은 언론법제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가장 큰 기여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그가 언론학자로서 활동하던 시절(1958년

~1976년)은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은 시대였음을 감안할 때 그의 연구업적이 그 엄밀함과 자료의 수준 등에서 모범적이라고 보이는 한편, 미국과 같이 200년 이상 축적된 풍부한 관결레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법해석적인 측면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언론법제 영역의 방법론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아울러 Q방법론을 이용한 인식연구를 통해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시도하여 언론법제 영역이 독립된 연구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한 연구자는 언론법 내지 언론법제에 관한 논의는 그 범위 · 연구방법 등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성낙인, 1994).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평가가 가능했다. 언론학자와 법학자간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상호교류가 부족했던 것도 언론법제 연구 영역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언론법제 영역은 커뮤니케이션학 영역에서 당당히 독립된 연구 분야로 인정받고 있으며, 비록 연구 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 타 영역에 비해 아직까지 열세에 있지만 전문연구자 수가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손꼽을 정도라는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결집된 연구의 역량을 발휘하는 분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유의선, 2009; 이승선, 2014). 여기에 1세대 학자인 장용이 그 시대에 기울였던 학문적 노력에 대한 온고지신의 평가를 앞으로의 언론법제 연구에 적극 반영한다면 우리나라 언론법제 연구는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의 단면적인 1세대 탐구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술적인 연구에 머물렀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당시로서는 장용의 새로운 연구방법 도입이 적절했는지, 이를 연구에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 한계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그의 연구들이 이후의 연구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구 (2013). 희관이 본 동아시아 근대언론의 생성: 세계언론사의 시점에서. <언론정보연구>, 50권 2호, 101~121.
- 김영희 (2016). 1960년대 언론인 박권상의 언론학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60(2), 154-177.
- 성낙인 (1994). 한국 언론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중재>, 통권 50호(봄), 6~20.
- 양승목 (2016). 남정 김규환 박사의 삶과 커뮤니케이션 연구. <언론정보연구>, 50권 2호, 122~145.
- 양재규 · 이창현 (2016). 범죄기사에 대한 언론인과 법조인의 인식 유형 및 그 특징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15권 3호, 251-287.
- 염규호 (1999). 미국 대학의 언론법 교육 현황. <언론중재>, 19권 3호, 17-26.
- 유의선 (2009). 미디어 법제 50년. 언론학회 50년사 콜로кви엄 발표 논문, 2009.3.12, 배재학당.
- 이승선 (2014).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2011~2013년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3권 1호, 1~28.
- 이승선 (2007).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안기부 X과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38호, 211~244.
- 이승선 (2005).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227-262.
- 이승선 · 이재진 (2011).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언론과 법>, 10권 1호, 153-188.
- 이재진 (2007). 한국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과 쟁점. <언론중재>, 통권 100호(겨울), 4~20.
- 이재진 (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재진 (2002). <한국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 출판부.
- 이재진 · 박성순 (2015).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언론중재>지 30년의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1권 3호, 213~260.
- 이재진 · 이승선 (2008). 언론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언론과 법>, 7권 1호, 105-134.
- 임병국 (2002).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 장 용 (1975). 외설의 한계와 판단기준. <신문평론>, 1월호.
- 장 용 (1972). 각국 기자등록제의 역사적 고찰. <신문평론>, 40호(봄/여름),
- 장 용 (1969). 「커뮤니케이션」과 名譽毀損. <신문학보>, 제2호, 21~40.
- 장 용 (1969). <언론과 인권>. 서울: 선명문화사.
- 장 용 (1963). 신문의 마성과 신문위력의 한계. <민족과 자유와 언론>(고재욱 선생 화갑기념논총). 서울: 일조각.
- 장 용 (1963). 필화사건의 발생요건. <신세계>, 1권 3호.
- 장 용 (1962). 신문의 책임과 신문인의 질. <신문연구>, 3권 1호(봄), 126~133.
- 장 용 (1962). 신문의 품위. <신문연구>, 3권 2호(여름).
- 장 용 (1960). 커뮤니케이션과 객관적 보도. <신문학보>, 1호, 41~60.
- 장호순 (2016).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 정진석 (1994). 국내 언론법과 언론법제연구의 변천. <언론중재>, 통권 50호(봄), 21~38.
- 한국언론학회 (2009). <한국언론학회 50년사>. 나남출판.
- Bedeski, R. (1994).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Reform and Reconstitution in the Sixth Republic*. New York: Routledge.
- Chang, Y. (1967). Development of Korean journalism education based on American practic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Chang, Y. (1966). A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four nations: America, Japan, Korea and Philippines. Unpublished Material,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Chang, Y. (1958) Survey of Korean newspapers: Study of Rhee and the press. M.A. Thesis of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Gillmor, D. M. & Dennis, E. (1989). Legal research in mass communications. In Stempel, G. & Westley, B. eds. *Research methods in mass communica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최초투고일 2017.11.16.
 논문수정일 2018.01.07.
 게재확정일 2017.12.28.

Abstract

A Review on the First Generation Scholar Young Chang'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Media Law Research

Jae Jin Le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Young Chang is one of the first generation scholars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field in South Korea and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first scholar who did corner-stone research in media law area. This study reviewed how much the research and writings of Prof. Chang made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media law education and research and the formation of media law area as an independent academic field.

It was found out that he was very influential in the journalism area. He received Ph.D. degree in the United States in 1967 and played a major role in introducing and implanting the American education and research system in journalism area to South Korea. He emphasized that the press freedom and the right to know are two most critical factors in democracy that we should make a proper balance with the right to reputation and privacy.

He wrote some articles, books, and newspaper works related with journalism and media law. Among them, the book 〈The Press and Human Rights〉 was most well-known and important work that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media law area in methodology and theory. In this book, he analyzed libel cases comparing Korean media law with American media law in order to deliver the significance of freedom of the press and right to know. In addition, he introduced Q-method in journalism research which was not familiar at the time.

In short, Prof. Chang's researches can be evaluated to enhance the level of media law research as well as journalism research. Especially, they gave some implications to the media law scholars in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in theory and methodology.

KEYWORDS

Yong Chang • case law study • Q-methods, first generation media law scholar • development in theory and methodology • human rights • right to know • freedom of the press